



# 아사디자인 제작 계약서

담당:

## 기본정보/계약사항

\* 사항은 반드시 기재하셔야 할 필수 항목입니다. ※ 제작서비스 및 내용은 아사디자인(<http://www.asadesign.co.kr>) 혹은 아사디자인에서 지정한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 업체명(대표자)	* 주민(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장 주소	* 대표 도메인	
* 연락처	● 전화1	● 전화2 ● FAX ● E-mail
* 담당자 (대리인)	● 성명	● 직위/직책 ● E-mail
	● 직통전화	● 휴대폰
* 프로젝트 명	서비스유형	
* 선택사항 V.A.T 별도금액	● 개발환경 ○ Linux+PHP 5.x+MySQL 5.x ○ 기타	● 언어/캐릭셋 ○ 국문 ○ 영문 ○ 일본 ○ 중문 ○ 기타   ○ UTF-8 ○ EUC-KR
	● 도메인 ○ 의회사 도메인사용 ○ 등록대행(1년: 30,000원)	● 기능추가 있을 경우 기재   추가비용
	● 호스팅 ○ 무상호스팅(계약일로부터 1년, 용량 MB/ 일트래픽 MB) ○ 타사/기타의 경우 기재	추가비용
	● 디자인추가 ○ 페이지 ○ 팝업디자인 ○ 기타	추가비용
● 기타사항	● 프로그램추가 ○ 팝업관리 ○ SMS (발송) ○ SMS (알람) ○ SSL ○ 기본회원제도 ○ 쇼핑채널   추가비용	

## 제작비 정보

※ 스마트반응형/테마반응형 세팅비 및 작업대행비는 일시선납기준입니다

서비스금액(A) :	선택사항 추가 비용 합(B) :	V.A.T 10%(C) :
총 제작비(A+B+C)		
● 계약금		● 잔금 (V.A.T 포함가)

## 계약 주요내용 고지

※ 본 내용은 계약서의 내용 중 반드시 의뢰사가 확인하고 동의할 부분을 모아 안내해드리는 것입니다. 계약서는 홈페이지에도 전문(全文)이 고지되어 있습니다.

- 당사에서 제공하는 호스팅 중 무상 호스팅의 경우, 계약일 기준 최대 1년입니다. 단, 무상 제공 기간 중 무상 호스팅에 연결된 도메인 네임서버를 타사로 변경한 경우 당사의 제공사업을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여 당사에서 인정한 시점에 사전 고지없이 무상 호스팅 제공을 중지하며 해당 계정과 내용 일체를 삭제합니다.
- 의뢰인(의회사)의 변심, 정책 변경, 사업의 변경 등을 이유로 진행중인 프로젝트의 내용(컨텐츠, 정보내용, 디자인, 프로그램, 개발 중인 일체의 사항)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최초 세팅비, 디지털저작권사용료, 기 투입된 인건비 등은 어떠한 이유로도 환불되지 않습니다.
- 확정된 제작범위에 따라 자료접수 → 기본 셋팅 → 디자인 → 코딩/프로그래밍 → 다이나믹작업 → 검수 → 완료의 단계로 작업되며 각 단계별로 확인을 받고 다음 단계로 이관됩니다. 의뢰인(의회사)의 확인(컨펌)을 통해 다음 단계로 이관된 경우에는 그 전 단계까지의 작업에 대하여 확정 및 합의 완료된 것으로 합니다. 유선(메일/FAX/전용센터) 등을 통하여 확정 및 합의된 후에는 계약 범위 중 누락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해당 부분에 대하여 당사에 작업 진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제작에 소요되는 모든 내용(컨텐츠)은 의뢰인(의회사)가 텍스트와 이미지 등의 파일 형태로 당사가 지정한 방식(메일/전용센터)을 통해 접수하여야 합니다. (특정 사이트의 URL 지정 및 이미지형태의 텍스트 등은 접수하지 않으며, 당사에서 작업하지 않습니다)
- 1페이지의 디자인 작업량은 A4용지 12포인트기준 1페이지 혹은 포토샵 1500픽셀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기준을 초과하거나 접수내용안의 정보가 명확히 다른 메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추가페이지로 간주하여 추가비용을 적용합니다.
- 상기 계약사항 및 제작범위외의 모든 사항은 추가작업으로 처리되며, 제작중에 발생하는 추가작업사항에 대해서는 당사의 확인 및 검토에 따라 해당 추가작업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도메인 연결시점이 제작완료 시점이며, 이후의 모든 변경내용은 유상청구대상입니다. 단, 당사의 오류이거나 제작 중 합의된 부분의 누락 부분은 제작완료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에 2차례의 메일/전용센터게시판/FAX의 접수내용을 근거로 제작범위의 총 10%내에서 무상처리해드립니다.
- 의뢰인(의회사)의 사정으로 인하여 30일을 초과하여 작업내용의 미확인 및 연락 두절이 지속될 경우 제작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 고지없이 제작 진행을 중단할 수 있으며 해당 저작물은 당사에 귀속됩니다. 또한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당사는 배상의 책임이 없습니다.
- 당사는 제작완료시점에 의뢰인(의회사)의 계약당사자와 유선, 혹은 전용센터를 통한 통보, 메일을 통한 안내 중 최소한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제작이 완료되었음을 안내합니다. 제작완료의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완료에 대한 동의 혹은 수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수정 요청은 상기 주요 내용 고지의 각 항의 범주내에 해당할 경우 진행해드립니다. 수정요청에 따라 진행되는 수정 작업은 소정의 기일로 하며 해당 요청사항의 확인으로 자동 제작완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제작완료통보일로부터 7일이 지난 시점까지 미 응답시 제작은 완료된 것으로 합니다.
- 제작완료 이후 의뢰인(의회사)에 귀속되는 저작물의 권리는 온라인 웹사이트에 대한 사용권이며, 당사에 제작시 통보된 도메인 1개에 한합니다. 따라서, 서브도메인 혹은 2차도메인을 통한 복제 혹은 다른 도메인을 이용한 다른 명칭을 사용한 복수 개의 사이트 운영, 인쇄물, 광고 사용 등은 당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 백업은 의뢰인(의회사)의 몫이며, 당사는 의뢰인(의회사)의 웹사이트 운영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또한, 당사가 이관해드리기로 한 모든 정보, 작업물 등은 의뢰인(의회사)의 요청에 의해 진행되므로 제작완료일 기준 30일이 지난 후에는 당사의 누락에 의해 이관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당사에 이관을 요청할 수 없으니 반드시 확인 후 누락된 경우에 해당 기간내에 이관 요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관요청이 부재하여 발생하는 이관정보의 소실 및 내용, 작업물의 소실에 대한 책임은 당사에 귀책되지 않습니다.
- 의뢰인(의회사)의 담당자 변경시 반드시 당사에 통보하여 당사 전산시스템에 해당 사항에 대한 변경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담당자 변경으로 인해 당사의 주요한 고지 및 의뢰사의 운영홈페이지에 대한 고지 등이 이루어지지 못해 발생하는 책임은 당사에 귀책되지 않습니다. 또한 당사와의 진행사항, 작업내용 등 본 계약사항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에 대한 인수인계는 의뢰인(의회사)의 전/후 담당자간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이미 고지 혹은 안내된 프로젝트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다시 통보, 안내하지 않습니다.
- 당사 호스팅 사용이 만료되는 경우 만료일로부터 60일까지 해당 자료가 보관되며, 보관기간이 경과된 후에는 삭제됩니다. 호스팅 기간에 대한 확인 의무는 의뢰인(의회사)에 있으며 당사의 연장 안내를 못 받으신 경우로 삭제된 경우에도 당사에 삭제된 해당 자료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의뢰인(의회사) \* 의뢰회사명 및 계약자명 은 상기 내용과 같은 제작내용, 제작범위, 계약 내용에 대한 고지에 대해 \* 확인 하였으며 이에 \* 동의 합니다.

계약 체결일	201	년		월		일	* 계약담당자	인/서명
--------	-----	---	--	---	--	---	---------	------

계약자(의뢰인(의회사))와 제작사 아사디자인은 상기 내용의 제작내용에 합의하며, 뒷면에 기재된 계약서 내용에 합의합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의뢰인(의회사)와 제작사는 본 계약서에 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하여 서명/날인합니다. 본 계약은 양측(양사)의 서명/날인과 상기 제작비정보에 따른 대금 납입의 당사 확인 두가지 모두 만족한 시점에 성립됩니다.

의뢰인(의회사)	제작사
* 업체명 :	* 대표자 :
* 사업자번호 :	인/서명
	● 업체명 : 아사디자인 ● 대표자 : 권재광, 김상운 ● 사업자번호 : 119-21-88590 ● 담당자 :



# 아사디자인 제작 계약서

의뢰인(계약자, 이하 "의뢰사"라 함)과 아사디자인(이하 "제작사"라 함)는 상호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이 웹사이트 제작 및 설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

## 제 1 장 계약 일반

제 1 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의뢰사"가 웹사이트 구축을 위하여 제작업체인 "제작사"에게 위탁한 웹사이트 제작 및 설치에 필요한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및 계약의 성립)

본 계약조건 및 수행계획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웹사이트"라 함은 "제작사"가 "의뢰사"의 비용을 통해 제작하는 홈페이지를 말한다.
- "약정기간"이라 함은 본 계약의 성립 후 최종자료를 도록일로부터 별도 명시한 소정의 기간(영업일 기준)의 기간을 말하며 계약 체결일은 그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 "산출물"이라 함은 약정기간 내에 본 계약에 따라 "제작사"가 "의뢰사"에게 제공한 용역의 결과물을 말한다.
- 계약은 계약서에 서명 날인 후 계약금 혹은 계약금중 지불함으로 성립되며 입금 확인이 되지 않거나 지연될 경우 "제작사"는 홈페이지 제작에 착수하지 않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의뢰사"의 어떠한 경제적, 정신적 손실에 대해서도 "제작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3조 (자료의 제공 및 보관)

"의뢰사"는 "제작사"에게 "웹사이트"를 제작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작사"가 지정한 방식과 일정에 의거하여 제공하며, 자료를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홈페이지 제작이 지연될 경우 그 기간만큼 홈페이지 제작 기간이 연장된다. 이 경우 홈페이지 제작이 지연됨으로써 발생하는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도 "제작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작사"는 "의뢰사"로부터 제공된 서류, 도면, 정보, 데이터, 기타 모든 자료를 주의 의무로 보관, 관리하고 사전에 "의뢰사"으로부터 승낙 없이 복제하거나 반출 혹은 본 건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지 않는다.

제4조 (계약기간)

웹사이트 제작 및 설치의 약정기간은 최종 자료의 도착일로부터 별도 명시한 소정의 기간(영업일 기준)으로 하고, "의뢰사"와 "제작사"의 합의가 있는 경우 계약기간은 합의된 기간만큼 연장 또는 축소되며, 본 계약조건은 새로 규정된 기간까지 유효하게 된다.

제5조 (산출물의 범위)

산출물의 범위 및 상성은 별도로 규정된 내용에 따른다.(계약사항 항목)

제6조 (산출물의 추가/변경)

"의뢰사"와 "제작사"는 용역수행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산출물에 대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쌍방의 사전 합의하에 이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때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제7조 (용역의 수행방법)

- "의뢰사"는 "개발"에 필요한 디자인, 이미지, 각종 "의뢰사"의 웹사이트 제작에 필요한 정보와 내용을 "제작사"에게 제공해야 한다.
- "제작사"는 용역의 수행 중 각 단계별로 "의뢰사"와 협의하여 작업을 진행하며, 각 단계에서 다음단계로 넘어간 상이한 하위 이전단계의 작업에 대한 수정은 정척의 변경, 의뢰사의 변심으로 판단하여 추가 비용을 청구한다.
- "의뢰사"는 "제작사"로부터 제작완료 혹은 홈페이지 최종 수정 완료를 통보 받은 후 5영업일 이내에 검수판정 결과를 "제작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해당일 이내에 "의뢰사"로부터 별다른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검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 검수에 합격한 날로부터 "의뢰사"는 "제작사"에게 3영업일 이내 잔금을 지급하며, 잔금 후 2일 이내 "제작사" 는 "의뢰사"가 요청하는 도메인으로 원격지에서 당 웹사이트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설치와 완료하며, 본 시점을 제작의 완료로 본다.

제8조 (계약기간의 연장 및 추가비용 부담)

계약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뢰사"와 "제작사"는 상호 합의에 의하여 용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단, "의뢰사"의 요청에 의하여 계약기간이 연장된 때에는 이로 인하여 소요되는 추가 비용을 "의뢰사"와 "제작사"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9조 (용역의 대가, VAT별도)

용역의 대가 및 상성은 별도로 규정된 내용에 따른다.(전연의 제작금액항목)

제10조 (웹사이트 수정 보수 내역)

"제작사"는 "의뢰사"에게 웹사이트 제작 완료일 이후 시행되는 무상 수정, 보수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며, 하기 4가지 항목 모두를 만족하는 경우에만 무상수정 및 무상유지보수를 시행한다.

- 메일/전송센터/FAX 등의 방법을 통한 누적 2회 이상 요청 접수근.
- 제작 완료일(도메인 연결시점)로부터 30일 이내에 접수된 내용일것.
- 접수분의 총 작업금액의 전체 제작물의 작업내용의 20%이내일 것.
- 계약항목에 따른 "제작사"의 오류, 누락 부분일 것("의뢰사"의 오류, 착오, 접수미비, 정책변경, 내용변경 등은 무상범위가 아님)

제11조 (계약항목의 추가, 신설 작업)

- 웹사이트 제작 중 접수되는 수정 및 변경 요청 혹은 신규사항의 추가 요청의 경우, 계약한 비용을 초과하는 범위의 신설 것으로 제작사에서 확인되면 "제작사"는 작업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 후 해당 작업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작업을 수행하며 이때 추가작업의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추가 작업비를 납부한 경우에만 해당 수정 및 추가 작업을 수행한다.
- 웹사이트 제작 완료일 이후 발생하는 추가, 변경, 신설 제작의 경우, 작업 비용을 별도 협의하여 제작에 합의한 경우 추가, 변경 계약서를 작성한 후 계약을 이행할 수 있으며 그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웹사이트 개편 및 신설 프로그램 혹은 기능의 수정, 변경, 신설비용
  - "계약사항"에 의거하지 않은 디자인 및 매체 변경 및 추가 부분

제12조 (웹사이트 산출물과 저작권)

- "웹사이트"가 저작권료 및 용역비가 완물 되었을 때 저작권은 "제작사"로부터 "의뢰사"에게 양도된 것으로 간주하며 그 이전까지의 모든 산출 저작권은 "제작사"에게 있다.
- "의뢰사"에 귀속된 "웹사이트"의 저작물의 권리는 본 계약 온라인 웹사이트 1개(도메인 기준)로 한다.(서브도메인 및 2차 도메인은 별도 사유로 보며 인쇄물, 광고 등에 사용될 경우에는 별도 서면 합의 필요)
- 이 계약을 수행하기 위해 "의뢰사"와 "제작사"에게 제공한 자료에 대한 저작권은 "의뢰사" 또는 원 저작자에게 있으며 "제작사"는 저작권이 있다.
- "의뢰사"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제작사"가 이미 사전에 개발하거나 보유하고 있던 저작물을 활용한 경우, 원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제작사" 또는 원 저작자에게 있으며, "의뢰사"는 저작물에 대한 사용권만 가진다.
- "의뢰사"는 하나의 도메인에 한하여 사용권만을 갖는다.
- "의뢰사" 또는 원 저작자가 저작권을 가진 저작물에 대해 "의뢰사"는 이 계약에서 경합 범위에 한하여 사용권을 가지며 그 범위를 벗어나 해당 저작물을 재활동하거나 재배포할 수 없다. "제작사" 또는 원 저작자가 저작권을 가진 저작물에 대해 "의뢰사"에게 독점 사용권을 준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저작물을 다른 용도에 재사용할 수 있다.
- "의뢰사"와 "제작사"에게 제공되어 사용한 저작물이 저작권을 위반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의뢰사"에게 있으며 "제작사"는 어떠한 책임도 없다. "의뢰사"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제작사"가 개발 또는 제공한 저작물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제작사"에게 있으며 "의뢰사"는 어떠한 책임도 없다.
- "제작사"는 의뢰사"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의 내용 및 콘텐츠, 정책 등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며, 웹사이트 제작 후 운영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의뢰사"가 진다. 단, "웹사이트" 제작 시 "웹사이트 유지보수계약"이 "의뢰사"와 "제작사"에 의해 체결된 경우 해당 내용이 이 부분과 배치될 경우에는 "웹사이트 유지보수계약"의 해당 항목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 제2장의 의무 및 보증

제13조 (신의 원칙과 비밀유지)

- "의뢰사"와 "제작사"는 상호 신의와 성실 의무를 가지고 웹사이트 제작에 최선의 기술 투여 및 노력을 기울인다.
- 본 계약과 관련하여 상호간에 전달된 모든 정보는 계약체결 이전, 계약체결 이후 혹은 계약 의무가 완결된 이후에도 엄격히 비밀로 유지되어야 하고, 본 계약의 목적 이외에는 계약 당사자의 사전 허락 없이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제14조 ("의뢰사"의 의무)

- 본 계약의 내용 및 당사자/계약자 등의 내용에 허위로 등록을 해서는 안되며, 허위내용으로 "제작사"에서 인정한 경우에는 해당 권익을 박탈하고, 계약물의 모든 저작권을 회수한다.
- (무상지정 호스팅의 경우) "의뢰사"는 "제작사"가 지정한 네임서버로 "의뢰사"의 도메인 네임서버정보(DNS)를 변경해야하며, "웹사이트제작"이후 해당 정보가 변경된 경우 해당 정보를 변경한 시점부터 "제작사"가 제공한 무상지정 호스팅을 사용할 수 있다.
- "의뢰사"는 "제작사"의 서면 동의 없이 콘텐츠, 템플릿, 제작된 웹사이트의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 "의뢰사"는 자신이 구매한 콘텐츠, 템플릿, 웹사이트 등의 소스에 대해 별도로 지정할 의무가 있으며 "의뢰사"의 실수로 인한 자료의 손상 또는 분실에 대해서는 "제작사"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의뢰사"는 "제작사"에게서 제공받은 사이트 및 관련 접속정보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누출할 수 없으며, 누출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책임은 "의뢰사"에게 있다.
- "의뢰사"는 사회미풍양속을 저해하거나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 "의뢰사"는 "의뢰사"와 "웹사이트"의 제작을 위해 "제작사"에서 요청하는 제작 웹사이트에 대한 정보 및 내용을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제공 해야한다.
- "의뢰사"는 "의뢰사"와 "웹사이트" 제작에 있어 "제작사"와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상태에 있어야 하며 연락의 두절, 요청에 대한 무응답 등으로 인하여 "의뢰사" 웹사이트 제작에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된다.

제15조 ("제작사"의 의무)

- "제작사"는 "의뢰사"가 정당하게 요구하는 의견이나 불만에 대해서 즉시 또는 "제작사"가 정한 기간과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 "제작사"는 원활한 사이트제작을 위해 "의뢰사"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관하며 본인의 허락 없는 제3자에게 이를 제공할 수 없다. 다만 관계법령에 의한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 받은 경우나 정보통신위원회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6조 (보증의 한계)

- 제작시 사용한 프로그램에 대한 상세정보 및 해당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다.
- "의뢰사"의 데이터 보관 부실이나 가공 시에 콘텐츠 이상이 발생한 경우 "제작사"는 그로 인한 손실에 책임지지 않는다.
- "의뢰사"의 제작 중지거나 제작이 완료되어 운영 중에 전체지연, 전쟁, 화재, 수해, 도난 등에 의해 "제작웹사이트"의 일부 또는 전부가 손상되거나 부실될 경우에는 "웹사이트제작"의 보증 기한 내이더라도 "제작사"는 "웹사이트제작"의 환불, A/S서비스 등을 하지 않는다.
- "의뢰사"는 계약 웹사이트의 제작 중에 "의뢰사"의 사업 내용의 변경을 이유로 제 제작중인 웹사이트를 변경할 수 없다.
- "제작사"는 "의뢰사"가 "제작사"와 약정한 "웹사이트 제작 완료 예정일" 및 "웹사이트 제작 완료 예정일"을 근거로 광고집행 등 기타 연관사항을 집행하는 부분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는다. 즉, "제작사"는 사이트 제작에 대해서만 책임질 뿐, "의뢰사"가 제작일정을 판단하여 집행하는 어떠한 다른 사업행위, 영업행위, 광고행위, 유관정보, 타사 호스팅의 유지 등으로 말미암은 손실에 대해서 "제작사"는 책임지지 않는다.

제17조 (연책조항)

- "제작사"는 천재지변, 전쟁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웹사이트제작"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된다.
- "제작사"는 사이트의 설비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된다.
- "제작사"는 기간통신 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정상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이 면제된다.
- "제작사"는 "의뢰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이트 이용의 장애 또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웹사이트"는 "의뢰사"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제작사"는 "의뢰사"의 내부관계자 및 "의뢰사"와 제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다.
- "제작사"가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제작사"는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이 없다.

제18조 (웹사이트 데이터 보관 및 이전, 포트폴리오 게시 동의)

- "의뢰사"는 "제작사"에서 제작한 "웹사이트" 혹은 구애한 "콘텐츠"에 대하여 해당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백업하여 별도로 보관해야 한다.
- 상기 1항의 사항이 지켜지지 않아서 발생하는 데이터 손실에 대하여 "제작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제작사"에 복구신청을 하는 경우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를 판단하여 공시하며, 복구가 가능한 경우 복구할 데이터의 용량에 따라 복구작업에 해당하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 이용 중이던 웹사이트를 타 서비스(호스팅 기간변경 등)로 이관하고자 하는 경우 "제작사"는 사용중이던 웹사이트의 파일과 DB를 압축하여 다운로드파일로 제공한다. 단, "제작사"는 이관관련작업(이관시, 이관된 후 설치/복구/변경/수정작업)에 대해서 지원하지 않는다.
- "제작사"는 "의뢰사"의 웹사이트 제작 이후, "제작사"의 운영홈페이지 및 "제작사"가 제작하는 서류 및 문서 등에 "의뢰사"웹사이트에 대한 정보(이미지, URL, 의뢰사항, 제작일, 제작비, 제작유형, 제작형태)에 대해 게시할 수 있으며 "의뢰사"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

## 제3장 배상 및 분쟁

제19조 (웹사이트 제작의 지연)

"의뢰사"와 귀책사유로 인하여 웹사이트의 제작이 지연되었을 경우, 그 중지된 기간을 전체 용역의 수행기간에 산입하지 않으며, 계약기간 및 하자보수는 중지된 기간만큼 자동 연장된다. 단, "의뢰사"와 귀책사유로 인하여 웹사이트의 제작을 약정기간 내에 완수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 사실을 지체없이 "제작사"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총기간은 60일(영업일 기준)을 초과할 수 있다.

"제작사"와 귀책사유로 인하여 웹사이트의 제작이 지연되어 웹사이트의 제작을 약정기간 내에 완수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 사실을 지체없이 "의뢰사"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의뢰사"와 협의해야한다.

제20조 (용역의 중지)

- "제작사"는 용역의 대가 혹은 제3조에 규정한 자료를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용역의 수행을 중지할 수 있다.
- 본 조 1항의 사유로 인하여 용역의 수행이 중지된 때에는 그 중지된 기간을 전체 용역의 수행기간에 산입하지 않으며, 계약기간 및 하자보수는 중지된 기간만큼 자동 연장된다.

제21조 (계약의 해지)

본 계약의 해지는 다음의 경우 해지할 수 있으며, 상대방의 전용메일/FAX/우편 등의 수단을 통하여 해지를 통보한다.

- "의뢰사"는 "제작사"가 본 계약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다.
- "제작사"는 "의뢰사"가 본 계약을 위반하여 일정한 개발이 고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제작사"는 "의뢰사"가 14조 8항에 해당하는 상황(연락 두절 및 요청에 대한 무응답)을 30일을 초과할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22조 (계약해지의 절차와 소멸)

- 제 21조에 의거한 해지통보에 따라 상대방의 확인이 없는 날로부터 소멸의 기간을 7영업일로 둔다.
- 제22조 1항의 소멸기간 동안 해지통보를 접수받은 측이 연락 두절 및 무응답시 자동 해지된 것으로 본다.
- 제22조 1항의 소멸기간 동안 양측은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의거하여 원만한 계약협의를 하여야하며, 본 계약내용외의 항목을 통한 합의로 하여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 제22조 3항에 의거 연장된 계약은 서면 합의(메일/FAX)를 근거로 자동으로 해지가 철회된 것으로 하며, 추가적인 합의 내용은 본 계약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3조 (계약해약과 손해배상)

- 계약이 해지된 경우, 본 계약은 해지 즉시 그 이후의 효력이 상실되지만 이미 발생한 "의뢰사"와 "제작사"의 계약상의 권리, 의무에는 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본 계약의 해지된 경우, "의뢰사"와 "제작사"는 계약의 해지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의뢰사"와 "제작사"의 계약해지로 인한 배상금액은 "의뢰사"와 "제작사"에게 지불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 "의뢰사"와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그 납부된 금액과 저작물, 작업물은 "제작사"에 귀속한다.
- "제작사"와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그 납부된 금액에서 디지털저작물 구매비, 초기세팅비가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제작사"와 홈페이지에 고지한 환불규정이 있을 경우 이에 따라 처리하고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의뢰사"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24조 (저작권권리 손해배상)

- 제 12조의 저작권 관련한 위반이 있을 경우, 혹은 불법 복제하거나 판매, 임대, 공유 등을 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및 프로그램 보호법에 의거하여도, 형사상의 책임이 있다.
- 유대권 콘텐츠, 웹사이트 작업물을 사용하거나 사용범위를 넘어서 사용하는 경우는 해당 콘텐츠, 웹사이트 가격의 10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지불해야 한다.
- 무단으로 콘텐츠를 대량으로 사용, 배포한 경우 해당 콘텐츠, 웹사이트 가격에 반복사용 횟수나 매수를 곱한 금액의 10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지불해야 한다.

## 제4장 합의 및 기타

제25조(합의 및 기타 사항)

- 본 계약의 해석상 문제가 있을 경우, "의뢰사"와 "제작사"는 원활한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서로 협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 본 계약에서 중분히 표현되지 못한 사항이나 특별히 규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별도의 규정을 상호 협의하여 첨부할 수 있다.
- 본 계약 외의 발생된 사항은 사에서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상호협의 조정토록 하며, 불가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하고 이 계약이 관계법령과 배치되는 부분은 관계법령이 우선한다.
- 본 계약에 규정된 의무의 불이행이 천재지변, 전쟁, 폭동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해 발생한 경우 당사자가 그것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 본 계약의 내용과 "의뢰사"에 고지하는 "계약 주요내용 고지"와 배치되는 경우 "계약주요내용 고지"가 우선한다.
- 본 계약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작사"의 소재지 관할 법원에서 분쟁을 조정한다.

제26조 (계약의 통합성)

본 계약의 합의 및 "기본정보/계약사항", "계약 주요내용 고지", "제작비 정보"는 "의뢰사"와 "제작사" 당사자간의 웹사이트 제작과 설치에 관한 하나의 완전한 합의서이다. 본 합의서는 "의뢰사"와 "제작사" 사이에 오간 이전의 모든 합의사항을 문서화한 것이며, 본 합의서와 상충되는 어떠한 종전의 합의 또는 합의사항도 본 합의서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상실된다.

제27조 (계약의 양도 및 변경)

- "의뢰사"와 "제작사"는 상대방의 서면 동의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 또는 의무를 제3자에게 임의 양도, 대여, 담보제공 등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 본 계약조건권의 변경은 "의뢰사"와 "제작사"가 기명 날인한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변경될 수 있다.

제28조 (권리의 포기)

본 계약조건권의 어떠한 조항도 당사자의 기명 날인한 서면의 표기 각서에 의거지 아니하고는 그 권리가 포기 또는 해제되지 아니한다. 본 계약서의 계약 당사자인 "의뢰사"와 "제작사"는 사이트 제작에 대해서만 책임지고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2 부 작성, 대표 또는 그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사람이 상호 서명 날인한 후 각 1 부씩 보관한다.

부칙

(온라인계약의 대체) "제작사"는 본 내용을 아사디자인 혹은 "제작사"가 지정한 홈페이지내에 고지하며, "의뢰사"가 서비스 신청서 본 내용에 동의하는 것으로 본 계약이 성립되는 것으로 한다.